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조 은 경

한림대학교 심리학과

본 논문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사회적 요인들을 밝히고 그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하기 위한 방법상의 문제들을 조명하는 문헌 연구이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개념의 애매함으로 인한 측정 방법의 다양성 때문에 여러 연구들을 동등하게 비교할 수 없는 단점을 안고 있다. 그러나, 범죄의 피해를 입을 실질적인 위험, 범죄 피해 경험, 역할 사회화 과정, 대중 매체의 내용, 공식적 방어기제의 효율성 지각, 지역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반문명성(incivility), 사회적 통제의 약화, 심리적 취약성 등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드러났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지역사회 내부/외부에서 일어나는 요인 및 개인의 심리적 내부에서 일어나는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상호 작용하여 발생하는 듯하다. 시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한 제안도 논의되었다.

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 결정과 각종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근거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사용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설문 조사 등을 통해 나타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수치가 종종 인용되고 있지만 그 두려움의 근원에 대해서는 아직 체계적인 연구가 되어 있지 않다. 서구의 범죄학자들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위험 정도 및 이전에 피해자가 되어 본 경험 또는 다른 피해자를 통한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습득되는 것으로 추론하고 있지만 우리 나라에서 실제로 이러한 가정들에 대해서 체계적인 검증을 한 연구는 드물다. 실제로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 범죄 피해자가 되는 비율은 가장 낮다(Watt, 1984). 그렇다면, 실제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 파생되는 문제들(예를 들면, 노인 복지 문제, 여성의 안전 문제, 치안 문제 등)은 실제적인 범죄의 분포와는 독립적인지도 모른

다. 범죄의 두려움과 범죄 피해간의 관계가 왜 이렇게 나타나는지는 아직 설명되지 못한 부분이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사람들의 삶의 질과 관련하여 심리학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주제이다. 체감 범죄율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다면, 그들의 주관적 삶의 질은 당연히 저해 받게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심리적 반응이라고 보고 그것의 근원이 되는 각종 요인들을 문헌 연구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살펴보자 한다.¹⁾

1) 조사된 문헌 중 1990년대 중반 이후의 논문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이 주제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줄어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본 연구자가 문헌 조사를 완료한 시점이 빨랐기 때문이다. PsycLIT에서 'fear of crime'을 키워드로 사용한 결과 1990년부터 1995년 사이에 출간된 논문은 71편이었다. 본 연구자의 문헌 탐색이 좀 더 정밀하지 못하였던 것은 이 논문의 명백한 한계임을 인정한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fear of crime)”의 개념 정의와 연구 역사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범죄와 관련하여 사람에게 심리적 불편함을 초래하는 정서 반응이다. 그러나, Warr(1984)는 이 개념의 의미가 너무 다양하여 자칫하면 구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본 논문에서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구체적으로 ‘자신이 범죄의 피해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느낌’으로 정의하기로 한다. 여기서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기분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실제로 범죄에 대한 두려운 기분을 측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이 정의로부터 발생한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사용하고 있는 측정치는 자기-보고식 응답으로서 아주 인지적인 반응이다. 즉, 대개는 응답자의 과거 기억과 응답자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운 상황에 대한 인지 도식(schema)에 의존하여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한다. 그러나, 두려움에 대한 인지적 이해가 실제 상황에서 반드시 두려움의 정서 반응과 행동이 나타날 것임을 예측해주는 못한다. 따라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정의하느냐하는 문제와 측정의 문제는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그것을 ‘주관적 느낌’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출 때보다 결과되는 현상(예컨대, 범죄 예방 행동 등)에 초점을 맞출 때에는 좀 더 행동적인 측면에 중심을 두는 정의와 측정방법이 뒤따르게 될 것이다. 뒤에 이러한 측정의 문제를 좀 더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학자들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초반부터이다. 범죄는 범죄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은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 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여러 태도 반응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때문에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범죄학과 형사정책학의 주목을 받게되었다. 주로 연구되어온 주제들은 지역 사회의 피해율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도시 지역의 물리적·사회적 특성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Hunter & Baumer,

1982), 사회적 취약성과 물리적 취약성의 특징, 대중 매체에의 노출이 범죄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Doob & MacDonald, 1979), 범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발생하는 간접비용(Henig & Maxfield, 1978) 등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1991년과 1994년에 실시한 범죄피해조사에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다루어졌다. 그러나, 당시에는 범죄 피해 실태조사와 더불어 범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려는 노력의 일부로서만 다루어졌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성격만을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없는 듯하다.

두려움(fear)과 불안(anxiety) 정서에 관하여

인간이 일상 생활에서 경험하는 정서는 크게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으로 나뉘어진다(Watson & Tellegen, 1985). 긍정적인 정서에는 행복감, 사랑, 만족감, 유쾌함 등이 포함되며, 부정적인 정서에는 슬픔, 우울함, 분노, 혐오감, 불안감, 두려움 등이 포함된다. 두려움(fear)과 불안(anxiety)은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흔히 느끼는 정서이다. 무서운 이야기를 들을 때, 귀신 영화를 볼 때, 어두운 밤길을 혼자 걸어가는데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 때 사람들은 흔히 두려움과 불안을 느낀다. 두려움은 “위험하거나 해로운 자극이 존재하거나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는 정서상태로서 극도로 흥분된 내적-주관적 경험과 도망가거나 공격하고자 하는 욕구 및 여러 가지 자율 신경계 반응이 특징이다”라고 Reber(1985)는 정의하였다. 불안감은 좀 더 막연한 정서 반응으로서 앞으로 다가올 위험에 대한 기대를 포함하고 있으며,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위험감을 느끼는 것이다. 즉, 두려움은 현재 닥쳐 있는 위험에 대한 반응이며, 불안은 상상 속의 위험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Carlson & Hatfield, 1992). 또한, 두려움은 그 대상이 구체적이고 불안의 대상은 막연하다.

한편, 두려움과 불안은 공통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두려움과 불안은 다른 정서들과 구분

되는 고유의 특성을 지닌 정서 상태이다. 둘째, 둘 다 불쾌한 정서이다. 셋째, 두려움과 불안 모두 다가오는 위험에 대해서(against) 미래로 향한 정서이다. 넷째, 두 정서 모두 주관적인 신체의 불편감을 수반한다. 가슴과 목이 조여들고, 숨쉬기가 곤란해지며, 근육의 힘이 약해지고, 다리가 얼어붙는 듯한 느낌을 수반한다. 다섯째, 두려움이나 불안을 경험하는 동안에는 행동에 변화가 생긴다. 뛰어서 도망가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하는 것은 자발적 행동이며, 입이 마르고 땀을 흘리고 복통을 느끼는 것은 비자발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의 예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두려움과 불안은 동일하지 않은 정서이지만, 어떤 학자들은 강도가 약한 두려움을 불안으로 간주하기도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혼용해서 사용하기로 하겠다.

미국 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의 심리장애 진단기준(DSM-IV, 1994)에 의하면 불안을 지나치게 자주 또는 강하게 경험하는 사람을 불안장애자로 분류하고 있다. 불안 장애자는 긴장, 초조, 가슴이 두근거림, 경련, 메스꺼움, 현기증, 사고력 저하, 언어 장애, 두통, 설사 등의 특징을 나타내는 불쾌한 정서 상태를 겪고 있는 사람이다. 미국 인구의 약 4%가 불안 장애를 겪고 있다고 한다. 불안 장애는 공포증, 일반화된 불안 장애, 공황 장애, 강박증,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하위범주로 다시 분류된다. 이 중 일반화된 불안 장애가 가장 보편적인 유형인데 거의 항상 불안하며 뭔지 모를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항상 경계 상태에 있는 증상을 나타내 보인다.

그러나, 일상 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안과 두려움은 불안 장애자들의 정서보다 덜 강하고 덜 지속적이며 그 성격도 다르다.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사건들은 일상 생활 중에 무한정 많이 있다. 두려움을 느낌으로 해서 잠재적인 위험 요인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움은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정서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인간이 두려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다치게 되거나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에 자신을 계속 노출시킬 것이다. 또한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압도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정서를 조절할 줄도 안다. 어떤 사람은 불안과 두려움을 유발시키는 대상에 대한 생각을 회피함으로써 소극적으로 정서를 조절하고, 어떤 사람은 불안과 두려움을 유발시키는 사람과 장소를 회피함으로써 좀 더 적극적으로 자기 정서를 조절한다. 즉, 밤에 우범 지역을 회피하거나 호신용 기구를 지니고 다니는 것은 범죄에 대한 불안을 조절하는 적극적인 방략이 될 수 있다. 범죄 발생에 대한 두려움이 강할수록 결과적으로 사람들의 생활 영역과 사고는 제한되고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의 대처 방식만 가지고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를 완전히 파악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두려움에 대응하는 방식이 다르고 능동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대응 방식은 불안을 조절하는 한 가지 방략일 뿐이기 때문이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연구함에 있어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중 하나는 현실적 근거에 바탕을 둔 불안과 신경증적인 과민성 불안을 구분하는 것이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생활에 제약을 받고 삶의 질이 저하된다면 그 두려움의 근원을 제대로 파악하여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두려움과 불안 정서의 측정 방법

자기-보고 척도 성격심리학자들은 지필 검사(paper-and-pencil test) 방식의 자기보고 척도들을 많이 개발하였다. 두려움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척도들은 테일러 외현 불안 척도(Taylor Manifest Anxiety Scale: TMAS)와 상태-특질 불안 척도(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이다. TMAS는 만성적인 불안 수준을 측정하는 것인데, “나는 일을 할 때 굉장히 긴장된다.”, “한 가지 일에 몰두할 수가 없다” 등의 문항들에 대해서 “예” 또는 “아니오”로 응답한다. Taylor (1953)가 원래 이 척도를 개발했을 때에는 5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나중에 20문항으로 된 단축형이 개발되었다(Bendig, 1956). 오늘날 더 자주 사용되는 불안 척도는 Spielberger, Gorsuch, 및 Lushene(1970)이 개발한 상태-특질 불안 척도(STAI)이다. 상태불안은 지금 이 순간에 얼마나 불안을 느끼는가를 재는 것으

로 “나는 긴장된다,” “나는 조바심이 난다” 등의 문항에 “0”(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3”(아주 많이 그렇다)까지의 4점 척도로 평가하게 된다. 특질불안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느끼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나는 울고 싶다,” “나는 자신감이 없다” 등의 16개 문항들에 대해서 “1”(거의 없다)부터 “4”(거의 항상)까지의 4점 척도에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다. 특질불안척도와 TMAS는 동일한 것을 측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TMAS와 STAI는 모두 타당도와 신뢰도에 있어서 객관적 검사로 사용하기에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실제로 자기 주변에 존재하고 있는 위험 요인들을 지각한 결과 두려움을 느끼고 예방적인 행동을 취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성격 특징상 일반적인 불안감이 높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두려움도 따라서 높은 경우가 있을 것이다. 범죄에 대한 직접적, 간접적 경험 때문에 발생하는 두려움과 성격 특징 때문에 발생하는 이러한 두려움을 변별해내기 위해서 성격 불안 척도를 사용해도 좋을 것이다.

생리적 측정 방법 심장박동의 변화, 피부전도 반응, 눈의 움직임, 머리와 목의 근전도 반응, 호흡 등을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리적 반응은 두려움을 경험하는 순간에만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인위적인 실험 상황이 아닌 자연 상황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행동 측정 방법 불안을 경험할 때 자주 나타나는 증상들을 열거하고 그 증상이 얼마나 강하게 경험되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두렵고 불안할 때 흔히 나타내는 행동은 다리 떨기, 손으로 뭔가를 만지작거리기, 말과 함께 사용하는 제스처 등이다. Zung(1971)은 20가지 신체 증상을 가지고 불안 증 정도를 평가하는 방식을 개발하였다. 신체 증상 목록에는 불면증, 얼굴이 달아오름, 어지러움, 안절부절못함 등의 경미한 증상 뿐 아니라 공황, 구토, 경련, 정신적 와해 등의 심각한 신체 증상들이 포함되

어 있고 심리 치료자는 환자가 각 증상을 얼마나 심각하게 겪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Zung은 심리 치료자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한 증상과 내담자 자신이 스스로 보고한 불안 정도가 일치함을 발견하였다. 언어적 보고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나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언어적 반응보다는 신체 증상을 관찰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말로 기술하는 능력이 낮으므로 어린이의 공포 반응은 행동 관찰이 더 타당하다. 비행기 추락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공항의 알콜 판매량과 여행자 보험 가입 현황 등을 조사하는 것도 간접적으로 두려움 행동을 측정하는 한 예가 될 수 있다(Carlson & Hatfield, 1992)에서 재인용). 경험자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않고 두려움과 불안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연구들은 앞으로 더 나은 행동 척도가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하여 특정 지역 회피 행동, 호신용 무기 소지 등의 범죄 예방 행동과 제한된 활동성을 두려움의 행동적 지표라고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범죄 예방 행동과 제한된 활동성은 두려움과 관련된 대처 방식의 일면이지 두려움 정도의 경험 정도를 재는 지표는 되지 못한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하는 문항: 종속 변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물어보는 문항

여러 가지 문항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밤에 집 주변(이웃)을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라는 질문이다. 이에 대해서 응답자는 ‘아주 안전하다’, ‘비교적 안전하다’, ‘다소 안전하지 않다’, ‘아주 안전하지 않다’ 등의 척도에 응답한다. 그러나, 이런 문항을 범죄 두려움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첫째, 이 문항에서 ‘범죄’라는 것을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자가 범죄를 염두에 두고 응답을 하는지 의문이 생긴다. 대개는 이런 문항을 물어보기 이전에 범죄에 대한 추

세와 각종 통계치에 대한 질문들이 먼저 제시되기 때문에 응답자들은 당연히 범죄에 대한 위험을 물어보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는 기대를 한다고 연구자들은 가정한다. 둘째, ‘이웃’이 의미하는 범위가 응답자마다 다를 수 있다. ‘자신이 사는 곳’의 주변 지역을 의미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를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동 단위로 생각을 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지리적 근접성으로 이웃을 정의할 것이다. 셋째, 응답자가 혼자 밤에 돌아다니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데 사람에 따라서 혼자 밖에 돌아다니는 시간의 양이 다르다. 넷째, 어떻게 느끼느냐고 하는 질문은 실제로 경험하는 감정과 가상적인 상황에 대한 추론을 혼동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 문항은 질문자로 범죄의 두려움을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문항으로 여겨지고 있다(Garofalo, 1979). 그러나, 응답자가 범죄에 대해서 느끼는 두려움을 좀 더 직접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범죄에 대한 피해 가능성을 평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심리적 불편감과 그로 인한 행동의 제약을 물어보는 문항

“과거 (몇 년) 동안 범죄 때문에 활동을 제한하거나 바꾼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이 대표적이다. 구체적으로는, 무슨 일이 생길까봐 어떤 곳을 피해 다닌 적이 있는지, 혼자 다니기가 무서워 누구와 동행하기를 요청한 일이 있는지, 무서워서 무슨 일을 미룬 적이 있는지 등을 물어보기도 한다. 대개는 안전에 대한 질문과 이 문항에 대한 응답은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즉, 두려움을 많이 느낄수록 활동을 제한한 적이 많다고 응답하는 경향이 있다. Garofalo(1979)의 연구에서 밤에 혼자 다니기가 아주 안전하다고 느낀 사람들 중에서는 20%가 범죄 때문에 자신의 활동을 제한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에, 아주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73%가 자신의 활동을 제한한 적이 있다고 했다. 즉,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느낌이 일상 생활의 활동 범위

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범죄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물어보는 문항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절도, 강도, 폭행, 또는 강간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응답자가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사용하여 ‘전혀 심각하지 않다’에서부터 ‘아주 심각하다’까지 반응하도록 한다. 그리고 “당신이 (특정 범죄명)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물음에 대해서 ‘전혀 없다’부터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까지의 척도에 반응하게 한다. 심각성에 대한 이러한 질문은 객관적으로 범죄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평가하는 것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심각성 판단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분리시키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심각성 판단의 기저에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문항들이 개발되어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범죄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에 대한 문항은 좀 더 직접적으로 범죄가 자신에게 발생할 가능성 지각을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근원에 접근하는 구체적인 문항이 될 수 있겠다(Lewis & Maxfield, 1980).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독립 변인

Garofalo(1979)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다섯 가지를 추출하였다. 범죄의 피해자가 될 실질적인 위험, 범죄의 피해를 입은 과거의 경험, 특정한 사회적 역할과 관련된 사회화 과정, 범죄와 피해에 대한 대중 매체의 내용, 잠재적 범죄자와 피해자간에 존재하는 공식적 방어기제의 효율성 지각 등이다. 본 논문에서는 Garofalo(1979)가 열거한 다섯 가지 요인과 더불어 지역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반문명성(incivility), 사회적 통제의 약화, 심리적 취약성 등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설명해 주는 그 외 다른 요인들도 살펴보고자 한다.

표 1. 피해율의 추정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 미국 8개 주요 도시의 조사 결과

		1,000명 당 피해 발생률	'다소 안전하지 않다' 또는 '매우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율(%)
나이	16-19	125	37
	20-24	105	38
	25-34	76	37
	35-49	51	43
	50-64	42	50
	65세 이상	34	63
성별	남성	90	26
	여성	54	60
인종	백인	69	41
	흑인	72	54
가족 소득	\$3,000 미만	93	62
	\$3,000-\$7,499	78	53
	\$7,500-\$9,999	70	45
	\$10,000-\$14,999	64	39
	\$15,000-\$24,999	59	34
	\$25,000 이상	56	30

(주) Garofalo(1979)에서 재인용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노출과 위험 요인

각 개인이 위험에 처해 있는 정도를 측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선행 연구들은 피해율과 관계가 있는 몇 가지 개인의 특성에 관한 요인들을 추출해 놓았다. 그 중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도 관계가 있는 것들이 나이, 성별, 인종, 소득 수준이다. 인구 천 명 당 범죄의 피해율이 가장 높은 연령은 16세에서 24세 사이의 집단이다. 남성보다 여성의 피해율이 약 2배 정도 높고 흑인이 백인보다 피해율이 약간 더 높으며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범죄 피해율도 높아진다. 범죄 피해율이 높은 집단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도 강하게 경험하는지는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일 예를 들기 위해서 Garofalo(1979)의 연구에서 표1을 재인용하였다(p. 85). 나이는 범죄 피해율과는 부적 상관 관계에 있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는 정적 상관 관계에 있다. 나이가 많은 집단일수록 피해율은 낮아지지만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더 강하게 경험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실질적인 피해율과 범죄의 두려움이 불일치 하는 것은 성별 비교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즉, 남성의 범죄 피해율이 여성보다 훨씬 높지만 여성의 범죄

에 대한 두려움을 더 강하게 느낀다. 그러나 인종과 소득 수준으로 구분한 집단 내에서는 범죄 피해율과 범죄의 두려움이 대개 일치한다. 이것은 같은 인종과 소득 수준은 대개 동질적인 주거 환경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런 듯하다.

지리적 주거 지역에 따른 위험도를 살펴볼 수도 있다. “이 도시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당신의 이웃은 범죄에 대해서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대부분의 응답자는 자신의 이웃이 다른 지역보다 덜 위험하거나 평균 수준이라고 응답하는 ‘안전에 대한 착각’적 반응을 나타낸다. 따라서, 자기 동네의 상대적 위험성에 대한 지각과 범죄의 두려움은 정적인 상관 관계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 지리적 환경에 대한 위험도를 좀 더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응답자의 주관적 보고뿐만 아니라 그 주거 지역의 지리적 특징과 그 주변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범죄 취약성 요인들에 대한 질문들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범죄 피해의 경험

Garofalo(1979)는 지난 12개월 동안 특정한 범죄피

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몇 번이나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연령과 성별을 통제했을 때 피해를 입은 경험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정적 상관 관계에 있음을 보였다. 즉, 피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범죄의 두려움을 적게 나타냈다. 여전히 성차는 나타났는데, 피해 경험이 없는 남성에 비해서 피해 경험이 없는 여성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훨씬 강하게 경험하고 있었다. 강간, 강도, 폭행, 절도 등의 피해 경험이 없는 35세 이하 남성이 밤에 혼자 다니기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한 비율은 15% 이었고 같은 연령층의 여성은 54%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응답했다. 피해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도 여성의 남성보다 훨씬 강한 두려움을 보고했다. 그러나 응답자 전체를 고려할 때 피해를 경험한 사람의 비율은 아주 작기 때문에 실제적인 피해 경험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많은 변량을 차지하지는 못할 것이다. 만약, 지난 1년 동안의 피해 경험이 아니라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범죄 피해를 고려하면 이 결과가 달라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대개 두려움은 최근의 경험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겠지만 먼 과거에 있었던 경험이 아주 선명하게 기억 속에 남아있거나 개인의 일생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건이라면 조건 형성을 통해서 현재의 두려움을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범죄 피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보다 두려움을 덜 느끼고 피해를 당할 가능성도 낮게 지각하는 것은 그들이 범죄의 위험 요인에 덜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사회심리학자들은 피해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지각하는 낮은 수준의 두려움은 일종의 착각현상(illusion of invulnerability)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자신을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려는 일종의 자기-고양적 편파(self-serving bias)인 것이다. 범죄의 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에 영향을 받은 결과 조건 형성되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강하게 지각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렇다면, 범죄 피해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서는 왜 이러한 착각이 일어나는가? 몇 가지 가능한 설명이 존재한다. 첫째, 피해 경험이 없는 사람은 범죄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그만큼 적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피해 가능성을 판단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정보 부족 현상 때문에 안전감에 대한 착각이 일어난다면, 간접적으로라도 범죄에 대한 정보(예: 아는 사람이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직접적인 피해 경험이 없어도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증가될 것이다. 둘째, 자아를 방어하기 위한 동기에서 자신의 피해 가능성을 낮게 지각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통제감을 증가시키고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다. Perloff와 Fetzer (1986)는 피해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의 위험 정도를 평가할 때에 자기보다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훨씬 큰 사람들과 비교함으로써 자신의 위험성을 낮추어 평가한다고 주장한다. 즉, 하향 비교(downward comparison)를 한다는 것이다. 부정적인 사견이 일어날 가능성이 대해서 판단할 때에는 그 사견의 피해와 관련된 대표적인 예를 떠올린 다음에 자신을 그 이미지와 비교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대비 효과가 발생한다. 이것은 사람들이 확률 추론에 사용하는 대표성 방략(representative heuristic)이다(Tversky, 1977). 어떤 범죄의 피해 가능성을 지각할 때에도 피해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비현실적으로 정형화된 피해자의 이미지와 자신을 비교하기 때문에 자신은 그만큼 안전하다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하향 비교 현상은 자신과 가까운 구체적인 인물(예를 들어, 가장 친한 친구나 가족)과 비교할 때에는 사라진다.

역할 사회화의 영향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설명하는 변인들 중에서 나이와 성별이 차지하는 변량이 가장 크다고 알려져 있다(Garofalo, 1979). 연령 및 성별에 따라서 실제적인 위험과 두려움간에 불일치가 발견되는 것을 성역할 사회화로 설명하는 학자들이 있다. Garofalo도 역할 사회화 요인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장 잘 설명해 준다고 주장한다. 여성의 사회화 과정은 순종적인 것을 강조해왔고 남성의 사회화 과정은 자기 주장적인 것을 강조해왔다. Weis와 Borges(1977)는 순종적인

여성을 만드는 한 방법은 강간과 같은 범죄 공격에 대한 두려움을 갖도록 만들고 남성의 보호에 의존해야 한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사회화 과정을 거치고 난 여성은 객관적 피해 위험성에 관계없이 남성보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더 강하게 느낄 것이다. 여성은 범죄의 두려움을 강하게 느끼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럽게 활동하고 그 결과 범죄 피해율은 오히려 남성보다 낮아질 수 있다. 또한 남성은 두려움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인정하지 않도록 사회화된다. 응답자가, 특히 남성 응답자가, 실제로 두려움을 느끼는 정도를 솔직하게 반응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바람직성 동기에 좀 더 민감한 측정 방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나이가 든 사람들은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의존성, 고립감, 두려움 등을 느끼도록 강요된다. 현대에 와서 대가족 구조가 약화되고 직장을 은퇴하고 신체적으로도 약화되는 것 등은 모두 노인들이 취약함을 더 강하게 느끼도록 만드는데 기여한다. 그러나 만약, 노인의 생활 환경이 고립되지 않고 자녀 등의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환경이라면, 그리고 노인의 생활 반경이 친숙한 환경에 제한되어 있다면 노인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정도는 그다지 높지 않을지도 모른다. 서구 개인주의적 사회의 노인들과 우리 나라와 같은 집합주의적 사회의 노인들을 비교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언론 보도의 영향

언론과 대중 매체에서 범죄와 사회 비행에 관한 내용들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언론과 대중 매체를 접하는 정도가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대중 매체의 효과에 대한 결론은 아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이며, 만약 매체가 사람들의 심리에 영향을 미친다면 어떤 방식으로 그 효과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에서 1975년에 실시된 범죄 조사에서는 “신문이나 TV에서 보도하는 것보다 범죄는 덜 (혹은 더 많이) 심각한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매체의 효과를 측정하려고 하였다. 매체에서 묘사하

는 것보다 범죄가 덜 심각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다른 응답자들보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적게 경험했다. 그러나, 두려움의 수준에 관계없이 매체에서 묘사하는 것보다 실제로는 범죄가 덜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대부분은 매체에서 보도하는 것만큼 범죄 문제가 심각하거나 혹은 그것보다 더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대중 매체는 실제 범죄 사건 보도와 범죄와 관련된 픽션물을 나룬다. 매체에서 나루는 실제 범죄는 대부분이 경찰에 적발된 범죄 사건들이며 경찰에 보고되지 않은 범죄는 고려되지 못한다. 이러한 사건들의 묘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범죄 위협이 전달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대중 매체가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미세한 수준에서의 실험적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대중 매체를 사회화 매체의 한 유형으로 간주한다면, 대중 매체가 남성과 여성의 역할 및 노인의 역할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고, 매체의 사회화 작용으로 인해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잔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워볼 수도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병기와 이기웅(1995)에 의해서 언론의 범죄 보도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 간의 관계가 조사된 바 있다. 그들은 서울 시민 800명을 대상으로 범죄 인식과 범죄 보도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하였다. 범죄 인식은 범죄율에 대한 인식, 범죄에 대한 두려움, 범죄의 원인 및 대책에 대한 인식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 시민들은 범죄의 종류에 관계없이 범죄의 실제 증가량보다 범죄 발생률을 더 높게 추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신의 주거 인근 지역에서의 범죄율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범죄율을 낮게 평가했다. 밤에 혼자 걷기, 밤에 혼자 집에 있기, 밤에 혼자 택시 타기 등 범죄 불안 상황에서는 높은 두려움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이병기와 이기웅의 조사에서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는 방송 매체를 통한 범죄 프로그램이 상호 작용함이 나타났다. 즉, 범죄 프로그램을 많이 접할수록 범죄에 대한 위험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성, 과출소의 위치 인지 여부, 거주 지역, 대인 범죄 피해 경험 여부, 사회 경제적 계층 등을 통제했을 때, 이미 범죄에 대해서 극심한 두려움을 지니고 있거나 범죄와 자주 접할 수 있는 환경에 거주하는 경우, 아니면 범죄로부터 도피할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범죄 프로그램에 노출되는 것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별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범죄에 쉽게 노출되지 않는 환경에 있으면서도 스스로 범죄에 취약하다고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범죄 프로그램에 노출되는 것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더욱 증가시켰다. 후자의 두려움은 범죄가 발생하는 현실적인 요인들로부터 유발된 것이 아니라 언론의 보도에 의해서 구성된 두려움일 가능성이 크다.

Gerbner의 도식이론 Gerbner의 도식이론(script theory)에 의하면 대중 매체의 폭력물을 반복해서 접하게 되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폭력의 정도에 대한 추정치가 증가하게 되고 폭력의 허용성에 대한 수용도도 높아지게 된다(Gerbner, Gross, Morgan, & Signorielli, 1986). 따라서 대중 매체의 폭력물을 반복적으로 접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폭력의 만연 정도에 대한 가치관이 영향을 받게 된다. 이와 유사하게 범죄에 대한 언론의 보도를 많이 접하는 사람들은 범죄 보도를 적게 접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범죄가 널리 퍼져 있는 정도를 과대 평가하게 되고 따라서 자신의 주변에서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과 자신이 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을 더 높게 평가할 것이다.

제삼자 효과 Gerbner의 도식 이론의 기본 가정을 달리 말하면 사람이 대중 매체를 많이 접할수록 다른 사람들의 신념과 자신의 신념이 유사함을 느낀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도 자신과 같이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믿는 경향성을 ‘오류성 합의 효과(false consensus effect)’라고 부른다(Ross, Greene, & House, 1977). 그런데 대중 매체의 효과에 관한 또 다른 해석은 “제삼자 효과(third person effect)”라고 하는 것이다(Davison, 1983). 제삼자 효과는 대중 매체가 자

신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신념, 태도, 및 행동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 경향성을 말한다. 정치 캠페인 광고, 폭력물, 음주 운전에 대한 공익 광고 등 다양한 매체 내용에서 오류성 합의 효과보다는 제삼자 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공익 광고와 같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내용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삼자 효과가 덜 나타났지만 바람직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훨씬 많이 받는다고 생각했다. 이 효과는 대중 매체에 대한 노출량을 통제했을 때에도 유지되었다. 이러한 지각은 여러 가지 방송이나 신문 매체의 내용에 대해서 일어나는데 대개는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잘못 판단한 결과로 발생한다(Duck & Mullin, 1995). 즉, 제삼자 효과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가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에는 상황적 요인의 효과를 파소 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종의 귀인 오류이다 (Gunther, 1991).

제삼자 효과는 비교 대상이 누구인지와 매체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상황 정보가 불투명하고 모호한 불특정한 다수 또는 좀 더 넓은 범위의 타인(예: 한국인 전체)과 비교할 때에는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타인(예: 같은 지역 구민)과 비교할 때보다 제삼자 효과가 두드러질 것이다(Innes & Zeitz, 1988).

안전에 대한 착각(illusion of invulnerability) 범죄, 질병, 이혼 등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그런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파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안전에 대한 착각 때문이다. 안전에 대한 착각을 입증해 주는 연구들은 많이 있다. 사람들은 평균적인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 건강하며 걸리는 질병의 수도 더 적다고 생각하며(Larwood, 1978), 대학생들은 자신이 통계상의 평균보다 10년 더 오래 살 것이라고 예측하고(Snyder, 1978), 다른 사람보다 이혼할 확률이 낮으며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Perloff & Farbiss, 1985). 이러한 결과들은 위험에 대한 지각도 마찬가

지로 편향되어 있을 것임을 암시한다.

안전에 대한 착각은 자신의 위험을 추론할 때 타인과 비교를 하기 때문에 생긴다. 대개는 자기와 유사한 타인과 사회 비교를 하는데(Festinger, 1954) 질병이나 범죄 등 자아를 위협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유사한 타인보다는 자기보다 더 취약하고 피해 가능성성이 큰 사람들과 하향 비교를 한다. 이런 식의 하향 비교 결과 자신은 허구적인 안전감을 가지게 된다. 특정한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애매하고 추상적인 타인('친구 중의 한 사람' 또는 '평균적인 대학생')과 비교하라고 하면, 그 사건에 노출될 확률이 큰 사람을 선택하여 비교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식의 하향 비교에는 동기적 요인과 인지적 요인이 모두 관여한다. 동기적으로는 자신보다 취약한 사람과 비교함으로써 비 피해자의 불안을 줄이고 개인의 통제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 즉, 자아 방어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인지적으로는 부정적 사건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전형적인 피해자의 이미지에 대한 비현실적인 고정 관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자신과는 동떨어져 보이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안전에 대한 이러한 착각은 평균적인 보통 사람과 비교할 때는 일어나지만, 구체적이고 가까운 가족, 친척, 친구 등을 비교 대상으로 지정했을 때에는 사라진다. 자신의 위험에 대한 편향적인 지각은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적절한 주의를 평소에 하지 못하도록 방치할 수 있기 때문에 잠재적으로는 위험한 결과를 내포하고 있다.

한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방어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좋은 속성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타인보다 자신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나쁜 속성은 자신보다 타인에게 더 해당하는 것으로 보려고 한다. 이러한 경향 때문에 대중 매체에서 보여지는 부정적인 결과는 자신보다 타인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여 제삼자 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긍정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자아를 보호하려는 경향이 덜 두드러질 것이기 때문에 제삼자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폭력이나 음란물 등 부정적인 매체 내용에 대해서는 자신이 상대적으로 덜 취약하다고 지각할 것이며 공익 광고 등의 긍정적인 매체 내용에 대해서는 자신이

상대적으로 더 민감하고 취약하다고 지각할 것이다.

Duck과 Mullin(1995)의 연구에서는 비교 대상인 타인을 여러 가지로 제시하였다. 모호하고 거리감 있는 타인('평균적인 사람'), 모호하고 가까운 타인('친구 중의 한 사람'), 구체적이고 거리감 있는 타인('Robert de Castella'), 구체적이고 가까운 타인('가장 친한 친구') 등의 네 유형의 비교 대상을 설정한 뒤 대학생 피험자들에게 여러 가지 매체의 내용이 자신과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7점 척도에 평가하게 하였다. 아홉 가지 매체 내용이 간략히 기술되었는데, 부정적 매체 문제(폭력, 성차별, 인종문제), 긍정적 매체 문제(반사회적 유혹에 대한 저항, 친사회적 행동, 타인에 대한 동정심 표현), 공익 광고 캠페인(음주 운전 감소, 안전한 섹스, 안전벨트 착용) 등에 대한 것이었다. 피험자들은 전반적으로 공익 광고가 자신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한 반면에 부정적인 매체 내용은 가장 적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다. 자신과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비교했을 때는 구체적인 타인보다 모호한 타인과 비교할 때 그 차이가 가장 두드러졌다. 즉, 부정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자신보다 타인, 특히 모호하고 거리감 있는 타인이 더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지각했고 구체적이고 가까운 타인에 대한 평가는 자신에 대한 평가와 차이가 없었다. 피험자들은 매체의 내용이 바람직하다고 볼수록 자신이 타인보다 그것에 의해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지각했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수록 자신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지각했다.

공식적 범죄 방어기제에 대한 태도

어떤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보호받고 있다고 느끼면 상대적으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 것이다. 여기에는 일상 생활에서 상호 작용하는 주변 인물과 경찰 등 공식적 범죄 예방 기구에 대한 신뢰가 개입된다. 현대 사회에서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의 가까운 주변 사람들이 범죄에 대한 방어 기제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경찰과 같은 공식적 매체가 보호 장치의 역할을 해준다. 따라서, 사람들이 경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신뢰와

확신감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Garofalo(1979)는 “일반적으로 당신은 지역 경찰이 (훌륭한/평균적인/평균 이하의) 역할 수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간에는 아주 미약한 관계가 있을 뿐임을 발견했다. 즉, 범죄에 대한 공식적 방어 수단에 대한 평가 때문에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영향을 받지는 않음을 암시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지역의 경찰이 평균 이상의 임무 수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아마도 자기 주변의 경찰이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안전에 대한 착각” 또는 “자기-고양적 편파(self-serving bias)”일 것이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처하는 경찰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와 일반적인 형사정책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에 괴리가 존재 할 수도 있다. 즉, 전체적인 치안 제도에 대해서는 불신을 가지고 있으나 자기 동네의 경찰은 비교적 역할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요인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간의 관계를 더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치안 제도에 대한 지각을 여러 수준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지역 사회의 구조적 변화

도시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 사회 또는 주변 이웃에서 최근 몇 년에 걸쳐서 기대하지 않은 변화가 일어나면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친다. 소수 민족과 청소년의 인구 구성비 변화, 반문명적 상징들(낙서, 쓰레기, 버려진 자동차, 빈 집 등), 10대 청소년 무리들의 움직임 등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의 구조적 요인들이다. 버려진 빈집이나 상점, 빈 공터, 쓰레기, 소음, 불량 청소년, 결연, 창녀, 술 취한 사람 등 이웃에서 볼 수 있는 반문명적 요인(incivility factors)들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유발시키는 데에 범죄 자체만큼 강력한 효과를 지닌다. 반문명적 요인은 거주민에 의해서 그 지역의 무질서를 암시하는 것으로 지각되기 때문이다(Lewis & Maxfield, 1980). Taylor와 Hale(1986)도 반문명성은 공공 질서가 결여되어 있음을 암시할 뿐만 아니라, 경찰이나 사법 당국이 그 문제들에 제대로 대처하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더 많이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한다. 반문명적 지표는 “나쁜” 지역을 의미하며 “나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조로 여겨진다. 반문명성은 지역사회 기준이 약간 무너지고 기존에 받아들여져 오던 규범과 가치가 부식되었음을 신호해준다. 여기에는 단정치 못한 물리적 환경과 파괴적인 사회 행동이 포함된다. 단정치 못한 물리적 환경에는 쓰레기, 방치된 풍선, 버려진 빈 집, 낙서, 버려진 자동차 등이 포함된다. 파괴적인 사회 행동에는 음주 소란, 불량 청소년, 거지, 떠돌이, 남을 개의치 않는 이웃 등이 포함된다.

Hunter(1978)가 처음으로 직접적인 범죄 경험보다 반문명적 요인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더 잘 예측해 줌을 명백히 밝혔다. 반문명적 요인 자체가 두려움을 유발시키는 것은 아니다. 반문명적 요인은 심각한 범죄 피해가 일어날 확률이 높음을 상징하는 단서로 작용한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이웃 환경을 범죄와 연합시키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 더럽고 지저분하고 낯선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그런 환경에서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경계심이 높아지는데, 만약, 이러한 지역에서 실제로 범죄가 많이 발생하면 사람들의 높아진 두려움은 합리적이고 기능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주민들이 실제로 범죄를 경험하거나 목격하는 일은 드물지만 반문명적 요인은 이웃에서 매일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쁜” 지역에 살고 있음을 신호하는 반문명적 요인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더욱 쉽게 자극할 수 있을 것이다.

Lewis와 Maxfield(1980)은 미국 시카고 주변의 네 개 주거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의 범죄에 대한 인식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전화 설문 조사하였고 그 지역 사회의 환경 여건 등을 현장 조사하였다. 주민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범죄 문제에 대해서 비교적 정확한 지각을 하고 있었고 어느 지역에서 특정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도 비교적 정확히 알고 있었다. Lewis와 Maxfield는 절도, 강도, 폭행, 강간 등의 네 가지 범죄에 대해서 그 범죄의 심각성과 범죄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조사하여 경찰 기록을 통

한 실제 범죄 발생률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공식적 범죄 발생률에 비해서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범죄의 심각성은 다르게 나타났다. 실제로 심각한 범죄의 발생률이 높은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범죄에 대해서 그다지 심각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어떤 골목은 위험하지만 우리 집 주변은 그에 비해서 괜찮다’라는 태도를 나타내 보였다. 그러나, 범죄 발생률이 아주 높지는 않으나 약간 높은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범죄에 대해서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특정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염려 수준과 범죄 피해 추정율이 일관성이 있게 높다고 해서 그 지역이 범죄 발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아니었다. 따라서 공식 범죄 기록과 지각된 위험 수준간에는 단순 상관 관계가 아닌 어떤 매개 변인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즉, 객관적 범죄 발생률 이외의 제 삼의 변인이 주민의 범죄 위험성 지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²⁾

Lewis와 Maxfield는 주변 환경에서 지각되는 반문명적 요인이 그 매개 변인일 것이라고 가정하고 10대 청소년들이 무리 지어 길거리에 나와 있는 것, 버려진 건물이나 상점, 불법 약물을 사용하는 사람들, 거리 낙서(vandalism) 등의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응답자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반문명적 요인에 대해서 심각하다고 반응한 응답자가 가장 많은 지역과 범죄 발생의 심각성에 대해서 가장 높은 추정을 한 지역이 일치함을 발견했다. 이 지역에서는 구체적인 범죄의 심각성보다 반문명적 요인의 심각성을 오히려 더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한편, 약간 높은 범죄 발생률에도 불구하고 반문명적 요인에 대해 그다지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지 않은 지역은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지각도 낮았고 피해를 입을 가능성에 대한 지각도 낮았다. 즉, 반문명적 요인에 대한 지각이 낮은 지역에서는 범죄 발생률과 범죄 심각성에 대한 태도가 정적 상관 관계를

2) 이 연구의 결과 중 흥미로운 것은 절도와 강도 중에서 절도의 발생률이 훨씬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비슷하게 추정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강간의 경우에 그 지역에서의 심각성 지각은 낮았지만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높게 지각하여 다른 범죄들에 비해서 심각성 지각과 피해 가능성의 지각간에 가장 큰 편차를 보였다.

나타낸 반면에, 반문명적 요인에 대한 지각이 높은 지역에서는 범죄 발생률이 범죄 심각성에 대한 태도를 예측해주지 못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범죄 문제 자체보다 반문명적 요인의 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따라서, 범죄의 두려움에는 범죄에 대한 염려와 반문명적 요인에 대한 염려가 함께 영향을 미치는 듯하며, 범죄율과 반문명적 요인의 상호작용이 가장 높은 지역에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범죄의 위험성도 강하게 지각될 것이다.

LaGrange, Ferraro, 그리고 Supancic(1992)도 반문명적 요인과 범죄의 두려움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LaGrange 등은 미국 전역에 걸쳐 18세 이상의 성인 1,101명을 대상으로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 전화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자의 성별, 연령, 인종 분포는 미국 전체 인구의 분포와 유사했다. 이와 같은 대규모의 전국 조사에서는 실제로 주변 환경의 객관적 반문명적 요인 지표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응답자의 주변 환경에 대한 지각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측정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조사에서도 인근 이웃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3점 척도 상에서 질문하였다. 사회적 요인으로는 나쁜 이웃 사람들, 통제되지 않은 청소년, 지나친 소음, 술 취한 사람 등이 포함되었고, 물리적 요인으로는 쓰레기, 돌아다니는 개, 빈 집, 버려진 자동차 등이 포함되었다. 사회적 요인과 물리적 요인은 서로 높은 상관 관계를 나타내었으나($r=.65$) 이론적으로는 독립적 개념으로 취급하여 분석되었다. 응답자의 1/4 정도는 반문명적 요인을 전혀 지각하지 못했다고 했고 대부분의 응답자는 한 두 가지 정도의 문제만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응답자의 19%는 자기 주변 이웃에서 5가지 이상의 문제를 심각히 여긴다고 반응했다. 응답자들이 가장 심각하다고 여기는 문제들은 돌아다니는 개, 통제되지 않은 청소년, 쓰레기 등이었다. 그리고 문제가 가장 적게 되는 것은 버려진 자동차와 빈 집이었다.

이전 연구에서는 인종, 소득 수준, 이웃의 응집성, 이전의 피해 경험, 그 지역의 범죄 문제 등이 반문명적 요인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혹

인, 히스패닉, 소득이 낮은 사람, 응집성이 낮은 동네에 사는 주민, 이전에 피해 경험에 있는 사람들, 범죄 발생률이 높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반문명적 요인에 대한 지각 수준도 높았다(Skogan & Maxfield, 1981). LaGrange 등의 연구에서도 연령(즉, 나이가 적을수록 반문명적 요인을 심각하게 지각), 인종, 피해 경험, 지역의 범죄 문제, 지역의 응집성, 이웃의 낯선 사람의 존재 등이 반문명적 요인 지각 수준과 유의미한 상관 관계를 나타내었다. 한편, 성별, 교육 수준, 도시/시골 지역 구분 등은 유의미한 상관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즉 시골에 사는 사람들도 도시 주민과 마찬가지로 반문명적 요인을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조사는 단지 응답자의 지각 수준만 조사했으므로 시골 지역에도 도시 지역 만큼의 반문명적 요인이 존재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LaGrange 등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범죄의 위험성도 각각 조사하였고 대인 범죄(살인, 성폭행, 폭행, 주거 침입 등)와 재산 범죄(사기, 차량 절도, 노상 강도, 낙서 등)에 대한 두려움과 위험성을 따로 조사하였다. 사회적, 물리적 반문명적 요인에 대한 지각이 높을수록 범죄에 대한 두려움도 높았다. 그러나, 사회적 요인과 물리적 요인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특히 반문명적 요인의 지각은 대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재산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더 잘 예측해주었다. 아마도 대인 범죄는 언제 어느 곳에서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반면에, 재산 범죄가 일어나는 상황은 더 쉽게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반문명적 요인 지표들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설명해주는 변량은 5% 이내로서 별로 크지 않았으며, 특히 대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설명하는 데에는 아주

미약했다. 전반적으로 반문명적 요인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범죄의 위험성 지각을 더 잘 예측해주었다. 이 연구자들은 그림 1과 같은 기본 이론적 모형을 가정하고, 반문명적 요인이 범죄에 대한 정서적 반응(즉, 두려움)을 직접적으로 고조시키기보다는 범죄의 잠재성에 대한 인지적 각성(예: 지각된 위험성)을 높임으로써 간접적으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기여한다고 결론짓고 있다.

지각된 범죄 위험성을 종속 변인으로 했을 때 유의미하게 예측해 준 사회 인구학적 변인들은 성별, 인종, 이전 피해 경험, 지역의 범죄 문제, 낯선 사람의 존재 등이었고 사회적/물리적 반문명적 요인은 모두 유의미한 예측 변인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사회의 반문명적 요인이 물리적 요인보다 좀 더 강력한 예측 변인이었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종속 변인으로 했을 때에는 연령, 성별, 교육 수준, 도시/시골 지역 구분, 지각된 범죄의 위험성 등이 유의미했다. 그 중 지각된 위험성과 성별이 가장 강력한 예측변인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연령이 유의미한 예측변인에 포함되기는 했지만 18세 - 24세의 젊은 층이 두려움을 가장 강하게 느꼈고 55세 - 64세 집단이 두려움을 가장 적게 느꼈으며 65세 이상의 응답자들에게서는 다시 두려움이 약간 증가하는 U-형 곡선적 관계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이전 연구들에서 노인들에게서 범죄 두려움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는 결과는 약간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LaGrange 등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반문명적 요인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범죄의 위험성 지각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즉,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 벽낙서, 술주정뱅이, 버려진 집과 자동차 등을 직접적으로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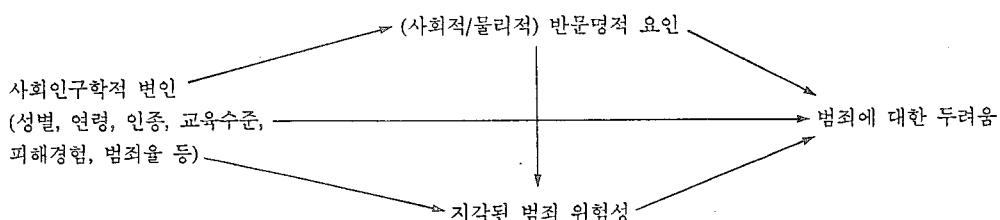


그림 1. 반문명적 요인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관계(LaGrange, Ferraro, & Supancic, 1992)

민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지만 나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적으로 지각하게 만들기에는 충분하다. 이러한 인지적 자각이 두려움이라는 정서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연령, 성별, 시간, 주변 상황, 취약성을 지각하는 성향 등 다른 요인들이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지각된 반문명적 요인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미약한 관계로만 나타난 것은 아마도 이 연구의 조사 표본에 나타난 반문명적 요인에 대한 '바닥 효과(floor effect)' 때문인지도 모른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주거 지역 주변에 존재하는 반문명적 요인 지표들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 사용한 두려움 척도는 다른 연구들이 사용한 것과 다른 데에도 그 원인이 있을 것이다. 다른 대규모 설문조사 연구에서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하는 항목들이 대개는 범죄의 위험성을 측정하는 것과 구분이 되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는 범죄의 두려움보다는 발생 위험성을 측정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Ferraro & LaGrange, 1987).

앞에서 소개한 두 연구들은 모두 지각된 반문명성을 측정하여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시키고 있다. 그러나, 지각된 반문명성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반문명적 요인을 얼마나 정확히 반영해주는가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객관적 반문명적 요인 수준은 범죄의 위험에 노출된 정도를 암시하는 지표라고 본다면 그것이 지각된 반문명적 요인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문제가 뒤따른다. Covington과 Taylor(1991)는 객관적 반문명적 요인보다는 지각된 반문명적 요인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더 강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따라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할 목적으로 구태여 반문명성의 객관적 수준을 파악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경찰이나 법의 영향력은 실제로 범죄의 활동이 일어나는 경우에 효력이 있지만, 직접적인 범죄 활동이 아닌 것으로부터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그 힘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길거리에 쓰레기 투기, 낙서, 자동차 파손 등은 범법 행위이면서도 엄격한 법의 제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버려진 빈 집, 10대

청소년들이 몰려다니는 것 등은 지역 사회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법적 제재가 미치기 어려운 부분이다. Lewis와 Maxfield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통상적인 경찰력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의 특성에 의해서 발생하거나 배제됨을 주장한다. 이러한 반문명적 요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 지역에서 범죄 위험 요인으로 지각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만약, 사회적 반문명적 요인이 물리적 반문명적 요인만큼, 혹은 그 보다 더,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면 물리적인 개입 못지 않게 파괴적인 사회 행동을 제거하고 정신적인 환경을 정화하는데 더 많은 개입이 있어야 할 것이다. Wilson과 Kelling(1985)은 두려움의 근원이 되는 것은 범죄자와 같이 난폭한 사람들이 아니라 불량하고, 예측할 수 없는 무질서한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사회적 통제의 약화

지역 사회의 환경에 따라서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지각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크기가 달라진다.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중소도시나 농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모든 범죄를 더 심각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고(Cullen, Link, & Polanzi, 1982), 한 도시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주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수준이 다르다(Maxfield, 1984a). 일본에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조사한 한 연구에 따르면(Ito, 1993), 거대도시 지역과 소도시 주민들이 대도시, 중도시, 농촌 지역의 주민들보다 14개의 구체적인 범죄들과 사건에 대한 두려움을 적게 나타내 보였다. 실제 범죄 발생률은 거대도시와 대도시가 훨씬 높고 소도시와 농촌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다. Ito는 지역에 따른 범죄 두려움의 차이는 공식적 범죄 통제력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소도시나 농촌 지역에서는 파출소 당 더 많은 인구가 배당되어 있고 지역적으로 경찰이 자주 순찰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식적 범죄 억제 기제가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있다. 그리고, 도시로의 이동 현상 때문에 주민간의 비공식적 방어 연

락당이 약화되어가기 때문에 사회적 통제도 약화되어간다. 거대 도시에서는 상대적으로 파출소가 많고 순찰도 찾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안전감을 느끼는지 모른다. 한편,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무심함과 질서 유지에 대한 무관심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낮추는데 기여를 할 가능성도 있다(Ito, 1993, 재인용).

공식적, 비공식적 통제가 약화되면 개인의 안전에 대한 염려가 증대된다. 우선 도시 환경의 외적인 변화가 통제의 약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도시 중심의 상업 지역이 확대되는 것, 경제적인 침체, 하층민의 이주 등과 같은 변화는 도시 환경의 통제력 변화가 일어나도록 만드는 중요한 생태학적 요인이 된다.

Hunter(1978)는 지역 사회의 침체로 인해 비롯되는 사회적 왜해(social disorganization)는 낙서, 쓰레기, 벼러진 집이나 자동차 등과 같은 반문화적인 물리적 부식 현상을 가져오며, 폭주족이나 방황하는 10대 청소년들의 집단 행동 등과 같은 반문화적인 사회적 부식을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이 때 주민들은 공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공식적/비공식적 힘이 점차 약해짐을 지각하기 시작하고 따라서 자신들이 범죄의 피해자가 될 위험이 더 커진다고 생각하게 된다. Wilson과 Kelling(1982)은 반문화적인 물리적 부식 현상을 내버려두게 되면 청소년들에게 반사회적 행동이 용납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신호를 보내게 된다고 지적한다. 또한, 청소년들은 주민들이 더 이상 공공 영역을 관리하고 감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된다. 따라서 감독자가 없는 청소년들과 관련된 문제가 더욱 증가하게 되고, 그 결과 주민들은 자신의 안전에 대해서 더욱 염려하게 되고 집 밖 출입을 삼가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주민들의 자연스런 감시가 소홀해지게 되면 궁극에는 그 지역 사회 바깥으로부터 침입자가 유입되고 그 지역의 우범성은 증가하게 된다. 결과적으로는, 주변 환경의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주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자연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반상회, 친목회, 동네 정보 전달 체계 확립, 지역 사회 행사 등을 통해서 이웃간의 유대,

친척이나 친구간의 결속력을 유지함으로써 사회의 통합성을 높이는 것도 범죄의 두려움을 예방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지각된 피해 가능성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체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이 있다. 여성이 남성보다, 노인층이 젊은 사람들보다 범죄의 두려움을 더 강하게 느낀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발견된 결과이다(Garofalo, 1981). 그리고, 서양에서는 흑인이 백인보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더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다(Parker, 1988).³⁾ Parker, McMorris, Smith, 그리고 Murty(1993)는 미국 내 소수 민족 인종별로 지각된 피해 가능성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다. 그들의 연구에서는 뉴욕시 지하철 승객 2,235명을 대상으로 어두워진 뒤에 지하철 타기, 지하철 안에서 강도·절도·폭행을 당할 확률 등을 물어보았다. 인종에 관계없이 여성 및 노인과 피해 가능성을 높이 평가한 사람들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더 강하게 느낀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흑인보다 히스패닉이 밤에 지하철에서 범죄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더 높게 지각했다.

실제로 노인과 여성의 범죄 피해율이 젊은이나 남성에 비해서 훨씬 낮다. 노인이나 여성이 지각하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피해 가능성은 직접적 피해 경험에 많거나 범죄 취약 지역에 노출되어 있어서 강하게 체감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범죄 발생에 대한 정보와 타인의 피해에 대한 정보를 접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여성과 노인은 만약 자신이 그러한 범죄 상황에 노출된다면 자기를 방어할 능력이 없을 것이라고 믿는 무력감이 강해서, 그 결과 잠재적인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진 것인지도 모른다. 자신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3) 그러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낮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일본에서 실시된 한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16개 항목에 대해서 하나도 두렵지 않다고 반응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증가했고 9개 이상의 항목에 대해서 두렵다고 반응한 사람들의 비율은 감소했다(Ito, 1993에서 재인용).

대처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앞으로 일어날 어떤 부정적인 일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할 때 불안과 두려움은 증가될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이 어떤 과정의 매개를 통해서 두려움에 작용하는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범죄에 대한 취약성(Vulnerability)

여성과 노인에 있어서 실제 피해율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범죄에 대한 자기 방어 능력 지각이 개입되기 때문일 것이라고 앞에서 논의한 바 있다. 자기 방어 능력을 달리 표현하면 범죄에 대한 취약성(vulnerability)이다. 여성의 성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강하게 느끼는 것도 남성이 평소에 노출되지 않는 성적 공격에 대해서 더 취약하기 때문이라는 관점도 이와 일맥 상통하는 것이다(Riger, Gordon, & LeBailly, 1978).

Killias(1990)는 취약성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설명해 주는 적절한 변인이라고 본다. 여성과 노약자들은 공격적 행동을 주로 하는 젊은 남성들에 비해서 신체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다. 그들의 방어 수단 부족, 통제의 상실, 결과의 심각성 등이 취약성을 결정하는 잠재적인 변인들이다. 두려움은 i)무시할 수 없는 위험에의 노출, ii)효과적인 방어 수단 또는 도피 가능성의 부족/상실, iii)심각한 결과에 대한 예전 등의 3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데 뒤의 두 요인들은 취약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다. Maxfield(1984b)가 샌프란시스코시의 3개 지역을 비교 조사한 결과, 연령(취약성의 간접적 척도), 주거 지역(위험 요인의 간접적 척도), 그리고 범죄에 대한 민감성(결과의 심각성에 대한 평가)이 모두 상호 작용하여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설명함을 발견하였다.

일반적으로 범죄가 일어날 것이라는 위험 지각이 공황 반응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그러나, 자신의 방어 기제가 기대되는 위험에 대해서 비효과적이라고 지각할 때에는 극심한 불안 반응 또는 공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즉, 범죄의 위험성이 얼마나 두드러지

는지(salience)가 중요하다. 심각한 질병에 걸릴 확률은 감기 등 흔한 질병에 걸릴 확률보다 대개 낮지만,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질병이 훨씬 두드러지게 지각되기 때문에 그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고 예방적 행동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자신이 범죄에 취약하다고 믿을 때에는 범죄가 실제로 발생할 확률에 상관없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강하게 느끼고 그에 따른 예방 행동도 많이 하게 된다.

이상으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여러 가지 변인들을 차례로 살펴보았다. 이들 중 어떤 변인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지, 이 변인들이 서로 독립적인지 등은 앞으로 실증적 연구가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물리적, 사회적, 상황적 요인들을 모두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개념이라는 점이다. 범죄와의 직접적 경험, 언론과 대중 매체를 통한 간접 경험, 주변 환경의 특징과 위험에의 노출 정도, 범죄에 대한 취약성, 사회인구학적 특성, 그리고 개인의 성격 특성들이 모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범죄 피해 연구(victimization survey)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

피해자 연구는 범죄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의 특성을 밝혀줄 수 있고, 범죄 사건의 개인간 역동성의 특징을 밝혀줄 수 있으며, 경찰에 보고되지 않은 숨은 범죄를 밝혀 전체 범죄성의 정도에 대한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준다(Gibbons, 1992). 지금까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피해 연구의 하위 조사 영역으로 포함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전에 실시된 주요 피해 연구의 내용과 결과를 요약해서 정리해보고자 한다.

미국 법무성은 1972년부터 전국 범죄 조사(National Crime Survey)라고 알려진 피해 설문 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이 조사에서는 26개 미국 주요 도시에 거

주하는 주민들의 대표 집단을 면담하여 특정 범죄의 피해 여부를 물어본다. 그 중에서 Garofalo(1979)가 인용한 1975년 범죄 피해 조사 방법을 예로 들어보겠다. 이 조사에서는 6개 중심 도시(애틀랜타, 볼티모어, 클리블랜드, 델라스, 뉴악, 포틀랜드 등)에서 각각 약 10,000가구를 면담하였다. 각 가구에서 만 12세 이상의 사람이 지난 1년간 경험한 범죄 피해를 물어보았다. 최종적으로 각 도시에서 21,000명 정도를 면담하게 되었다. 피해 범죄의 종류는 강간, 강도, 폭행, 소매치기, 침입절도, 차량 절도 등이었다. 그리고 범죄 피해에 대한 태도 질문지도 조사 도구에 포함되었다.

미국 연방 수사국(FBI)이 1988년에 실시한 피해자 조사에서는 실제로 경찰에 보고된 범죄 피해의 양은 피해자 조사에서 나타난 것의 1/3 밖에 안 됨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여성보다 남성이 훨씬 더 범죄 피해자가 많았고, 25세 이하의 사람들, 흑인, 저소득층 시민, 도심에 사는 주민들이 범죄 피해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Bureau of Justice Statistics, Bulletin: Criminal Victimization 1988, D.C.: U.S. Department of Justice, 1989).

우리 나라에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두 차례에 걸쳐서 범죄 피해에 관한 조사 연구를 실시한 바 있다. 먼저, 1991년에 행해진 '서울의 범죄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심영희, 김준호, 최인섭, 1992)는 공식 범죄 통계로 파악할 수 없는 범죄 현상의 정확한 발생 수준을 가늠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실시되었다. 이 조사에는 무선 표집된 서울 시민 2,000명이 전화 면접을 통해 참여하였다. 조사의 구체적인 목적은 정확한 범죄 피해율을 파악, 범죄 피해의 취약성 요인 파악, 범죄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태도 파악이었다. 구체적으로 선정된 범죄 유형은 자동차 절도, 자동차 손상/부품 절도, 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강도 등의 4가지 가구범죄와 대인 강도, 대인 절도, 폭행/협박, 성적 희롱 등의 4가지 대인범죄였다.

결과에 나타난 (대인)범죄 피해자의 특성은 성별, 연령, 교육 정도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 범죄 피해 예방/회피 요인, 일상 생활 요인들과 관련이 있었다.

남성의 피해율이 여성보다 약간 높은 경향이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고,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피해율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약간 외출시 특정 장소 회피, 약간 외출시 동행 요청, 호신 도구 휴대 여부 등 범죄 피해 회피 또는 예방 조치를 실행에 옮긴 사람들의 피해율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피해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범죄 피해가 범죄 피해 회피/예방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만들 가능성을 시사해주는 결과이다. 그리고, 피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경찰의 범죄 예방 활동에 대한 평가를 낮게 했다. 저녁 외출 빈도와 외출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 수단은 피해율과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사람들이 범죄 예방 대책으로 가장 많이 의존하는 방법은 경비전을 키우는 것(19.4%), 경비원(14.1%), 그리고 경보기(4.7%)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단 속이나 외출시 불 켜놓기 등은 범죄 피해의 경험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영희 등(1992)의 조사에서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약간 외출시 사용하는 예방적 행위의 빈도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밤에 외출할 때 (1)무슨 일을 당할까봐 어떤 곳을 피해 다닌 적이 있는가, (2)혼자 나가기가 무서워 누군가와 같이 나간 적이 있는가, (3)일이 있어도 무서워서 외출하지 않고 다음으로 미룬 적이 있는가, (4)만약을 대비해서 호루라기, 스프레이, 가스총 등의 호신용 도구를 가지고 다니는가 등의 여부를 물어보았다. 이네 문항 중 하나라도 그렇다고 응답하여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한 사람은 전체의 51.5%로 나타났다. 여성과 연령이 낮을수록 대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보고한 사람의 비율이 더 높았다. 노상 범죄의 피해 경험은 피해 다니는 행동에만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왔고 다른 문항들에서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피해 경험이 두려움을 증가시키는지를 보기 위해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와 없는 응답자를 구분한 결과, 피해 경험이 있는 사람들(전체의 47.4%) 중에서 예방적 행동을 한 사람은 74.1% 였고 피해 경험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는 69.6%가 예방적 행동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연구자들은 '피해 경험이 어느

정도는 두려움의 정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225쪽)고 결론짓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두 집단간에 유의미 겸증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료만 가지고 얻어진 그러한 결론은 타당하지 못한 듯하다. 그리고, 피해 경험 여부에 상관없이 여성이 남성보다 예방적 행동을 하는 비율이 훨씬 높았다. 여성 응답자들은 성범죄의 피해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수입 정도가 높을수록 범죄에 대한 두려움도 높아졌다. 성범죄 피해 경험이 있는 여성의 경우에는 연령층별로 두려움의 정도에 차이가 없었으나, 피해 경험이 없는 집단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두려움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심영희 등(1992)이 연구에서 사용한 두려움 지표가 과연 응답자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타당하게 측정한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연구자들은 네 가지 예방 행동 중 어느 한 가지라도 한 적이 있다고 한 응답자를 두려움이 '있는' 사람으로 분류하였고 아무 것도 한 적이 없다고 한 응답자를 두려움이 '없는' 사람으로 분류하여 각 조건마다 비교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란 것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있느냐의 문제로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방 행동의 빈도를 종속 변인으로 하였을 때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범죄 예방적 행동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연결되는 데에는 자신의 방어능력에 대한 취약성 지각 등 다른 매개 변인들이 작용할 가능성이 대한 체계적 고찰도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1994년에 다시 전국을 대상으로 2,029명의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최인섭·박순진, 1995). 이 조사에서도 범죄 피해의 실태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범죄에 대한 인식과 두려움 정도를 조사하였다. 자동차 관련 절도, 주거침입 절도 및 강도 등의 가구범죄의 피해는 아파트보다 연립이나 단독 주택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대인 절도 및 강도, 폭행 및 상해, 성범죄 등 대인 범죄는 40대 이상에 비해서 10대와 20대 연령층에서 피해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사람들은 최근 몇 년 동안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의 범죄 발생 추세보다 전국적으로 볼

때 범죄 발생이 더 크게 증가하였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재산 범죄보다 폭력 범죄가 우리나라에서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생각했으나 이것은 사실과는 반대되는 지각이다.

위의 1994년 조사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범죄의 피해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연령이 낮을수록 피해 가능성에 대한 지각이 증가하였다. 한 번이라도 범죄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범죄 피해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범죄로부터의 안전감에 대한 평가는 포괄하는 지역의 범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체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내리는 반면에, 자신의 지역 사회에 대해서는 중도적인 태도를 취하고, 자기 동네나 자신의 주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안전하다는 평가를 내리는 경향이 나타났다. 범죄의 두려움으로 인한 회피 행위는, 1991년 조사와 마찬가지로, 여성일수록, 피해 경험이 많을수록 더 높게 나타났다.

결 론

범죄율이 증가하고 선진국형 범죄가 많아질수록 일반 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도 증가할 것이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재산범죄보다 폭력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폭력범죄 중에서는 강도와 강간 등의 강력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범죄의 흥포화 현상이 자주 지적되고 있다(이재상, 1994). 그러나, 범죄 피해의 경험과 범죄의 두려움이 대칭적이지 않다는 연구 결과들은 범죄율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정비례 관계에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일단 두려움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민감성이 증가하면 그 것은 쉽게 낮아지지 않는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바깥 활동을 삼가게 되고 특히 야간의 활동을 줄이고, 위협하다고 여겨지는 곳은 회피할 것이며, 안전한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등의 행동 변화를 보일 것이다. 주민들의 이러한 위험 회피 행동은 주변 이웃과의 사회적 상호 작용 수준을 낮추게 되며 결국은 불신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지역 사회

전반에 두려움이 만연하게 되면 고소득자들은 타지역으로 이주를 하고 지역 경제가 영향을 받게 되며 비공식적 사회 통제 기체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 결국 지역 사회의 이러한 변화는 범죄율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이 지역에서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다시 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또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사람들로 하여금 직접적 간접적으로 개인적인 범죄 보호장치에 투자하게 만든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가정이나 직장 등에 경보 장치를 설치하고 경비원이나 경비회사의 서비스를 고용하고, 호신용 무기, 감시용 카메라, 자물쇠를 구매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즉,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이 경호와 경비에 소모된다. 공식적인 범죄 예방 기체가 아닌 이러한 사적인 범죄 예방 장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크다(Clotfelter & Seeley, 1979). 개별 가정에서 사용하는 범죄 경호 관련 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겠지만, 회사나 공동 주택 등에서 사용하는 범죄 보호 비용은 사용자들이 부담하게 되고, 가게에서 지출하는 경비 비용은 물건값에 반영되어 결국 소비자들이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클수록 그로 인해서 지출되는 사회적인 비용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역기능적인 요인들은 궁극적으로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려는 노력과 연결될 것이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려는 노력들(예: 길에 배치하는 경찰의 수를 늘리기, 가로등을 보완하기 등)이 범죄 발생을 예방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일반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에는 분명히 많은 공헌을 할 것이며, 특히 여성과 노약자들에게는 더 큰 효과를 가지게 될 것이다.

두려움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 설계와 관련해서 두 가지 이론적 모형이 있다. 첫째는 피해/기회-감소 모형이다(Taylor & Hale, 1986). 이 모형은 피해에 대한 직접적 간접적 경험의 기본적으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고 있다. 피해의 영향은 비공식적 지역 사회 연결망에 의해서 증폭되어서 범

죄에 대한 두려움을 더욱 증대시키게 된다. 따라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피해율을 줄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에서 범죄의 기회를 감소시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는 무질서/사회 통제모형이다. 이 모형은 지역 사회의 무질서에 대한 주민들의 지각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유발시킨다고 본다. 사회적 반문명적 요인과 물리적 반문명적 요인은 지역 사회가 혼란스럽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이에 대한 지각이 지역 사회에 대한 근심을 낳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비공식적인 사회통제의 연결망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위의 두 이론적 모형들은 모두 지역 사회 내에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행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사회의 밖에서 일어나는 요인들도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대표적인 것이 범죄와 관련된 대중 매체이다. 실제 범죄 사건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기에는 피해율이나 범죄 발생률이 너무 적거나 사회적 무질서에 대한 지각이 심각하지도 않은 지역에서도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경우가 있다. 이 지역의 주민들은 비록 범죄가 자기 지역 사회 내부의 문제는 아니라고 지각하지만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신문 등을 통해서 범죄에 대한 사건 보도와 범죄와 관련된 드라마 등을 거의 매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대중 매체는 지역社会의 질서가 무너져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다.

결론적으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지역사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요인과 외부에서 일어나는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상호 영향을 주는 복잡한 기체에 의해서 발생한다. 두려움 자체가 유발 요인들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다른 유발 요인들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대중이 체감하고 있는 안전에 대한 지표라고 볼 수 있다. 시민들의 두려움에 대한 연구 결과가 치안 활동에 대한 정책 결정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선행되어야 할 것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원인과 그것으로 인한 결

과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는 두려움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은 무의미하거나 오히려 역행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쉽다. 실제 범죄 발생률을 낮추는 데 주력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 사회의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어야 할지, 경찰과 사법 당국이 주체가 되어야하는지 아니면 지역 주민들의 주도적인 노력이 더 강조되어야 할 것인지 등의 대책은 정확한 이해에 바탕을 두어야만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나온 범죄 두려움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변인들을 열거하여 비판적 문헌 연구로서의 한계가 있지만 다음 단계에서는 이 변인들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연구할 것이다. 우리나라 시민들이 느끼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성격은 서양의 연구 결과와 다른지, 우리나라에서 범죄의 두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중점을 두어야 할 영역은 무엇인지 등 좀 더 실질적인 문제는 경험적 연구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심영희 · 김준호 · 최인섭(1992). 서울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병기 · 이기웅(1995). 범죄보도가 시민의 범죄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재상(1994). 한국의 범죄동향과 그 대책. 형사정책 연구. 제5권 제1호, 5-30.
- 최인섭 · 박순진(1995).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4th ed.): DSM IV*.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Bendig, A. W.(1956). The development of the short form of the Manifest Anxiety Scale.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0, 384.
-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Bulletin: Criminal Victimization 1988, D.C.: U.S, Department of Justice, 1989.
- Carlson, J. G., & Hatfield, E.(1992). *Psychology of emotion*. Fort Worth, FL: Harcourt Brace Jovanovich.
- Clotfelter, C. T., & Seeley, R. D.(1979). The private costs of crime. In C. M. Gray(Ed.), *The costs of crime*.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 Covington, J., & Taylor, B.(1991). Fear of crime in urban residential neighborhoods: Implications of between- and within-neighborhood sources for current models. *Sociological Quarterly*, 32, 231-249.
- Cullen, F, Link, B. G., & Polanzi, C. W.(1982). The seriousness of crime revisited: Have attitudes toward white-collar crime changed? *Criminology*, 20, 83-102.
- Davison, W. P.(1983). 'The third-person effect in communication'. *Public Opinion Quarterly*, 47, 1-15.
- Doob, A. N., & MacDonald, G. E.(1979). Television viewing and fear of victimization: Is the relationship causa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170-179.
- Duck, J. M., & Mullin, B.(1995). The perceived impact of mass media: Reconsidering the third person effect.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5, 77-93.
- Ferraro, K.F., & LaGrange, R. L.(1987). The measurement of fear of crime. *Sociological Inquiry*, 57, 70-101.
- Festinger, L.(1954). A theory of social comparison processes. *Human Relations*, 7, 117-140.
- Garofalo, J.(1979). Victimization and the fear of crim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16, 80-97.
- Garofalo, J.(1981). The fear of crime: Causes and consequences.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82, 839-357.

- Gerbner, G., Gross, L., Morgan, M., & Signorielli, N. (1986). Living with television: The dynamics of the cultivation process. In J. Bryant and D. Zillmann(Eds.), *Perspectives on media effects*. Hillsdale, N.J.: Erlbaum. pp.17-40.
- Gibbons, D. C.(1992). Society, Crime, and Criminal Behavior(6th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에서 재인용, pp.90-91.
- Gunther, A.G.(1991). What we think others think: Cause and consequence in the third person effect. *Communication Research*, 18, 355-372.
- Henig, J., & Maxfield, M. G.(1978). Reducing fear of crime: Strategies for intervention. *Victimology*, 3, 297-313.
- Hunter, A.(1978). *Symbols of incivility: Social disorder and fear of crime in urban neighborhood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Society of Criminology. Dallas, Texas, November.
- Hunter, A., & Baumer, T. L.(1982). Street traffic, social integration, and fear of crime. *Social Inquiry*, 52, 122-131.
- Innes, J. M., & Zeitz, H.(1988). The public's view of the impact of the mass media: A test of the "third person" effect.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8, 457-463.
- Ito, K.(1993). Research on the fear of crime: Perceptions and realities of crime in Japan. *Crime and Delinquency*, 39, 385-392.
- Killias, M.(1990). Vulnerability: Towards a better understanding of a key variable in the genesis of fear of crime. *Violence and Victims*, 5, 97-108.
- LaGrange, R. L., Ferraro, K. F., & Supancic, M. (1992). Perceived risk and fear of crime: Role of social and physical incivilities.
- Larwood, L.(1978). Swine flu: A field study of self-serving biase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8, 283-289.
- Lewis, D. A., & Maxfield, M. G.(1980). Fear in the neighborhoods: An investigation of the impact of crim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16, 160-189.
- Maxfield, M. G.(1984a). The limits of vulnerability in explaining fear of crime: A comparative neighborhood analysis.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21, 233-250.
- Maxfield, M.(1984b). The limits of vulnerability in explaining fear of crime: A comparative neighborhood analysi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21, 233-250.
- Parker, K. D.(1988). Black-white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fear and crim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28, 487-494.
- Parker, K. D., McMorris, B. J., Smith, E., & Murty, K. S.(1993). Fear of crime and the likelihood of victimization: A bi-ethnic compariso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3, 723-732.
- Perloff, L. S., & Farbissz, R.(1985, May). *Perceptions of uniqueness and illusions of invulnerability to divorce*.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idwestern Psychological Association meeting, Chicago.
- Perloff, L. S., & Fetzer, B. K.(1986). Self-other judgments and perceived vulnerability to victimiz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502-510.
- Reber, A. S.(1985). *The penguin dictionary of psychology*. New York: Penguin.
- Riger, S., Gordon, M. T., & LeBailly, R.(1978). Women's fear of crime: From blaming to restricting the victim. *Victimology: An International Journal*, 3, 274-284.
- Ross, L., Greene, D., & House, P.(1977). The "false consensus effect": An egocentric bias in social perception and attribution process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3, 279-301.

- Skogan, W. G., & Maxfield, M. G.(1981). *Coping with crime*. Beverly Hills, CA: Sage.
- Snyder, C. R.(1978). The "illusion" of uniqueness. *Journal of Humanistic Psychology, 18*, 33-41.
- Spielberger, C. D., Gorsuch, R. L., & Lushene, R. E. (1983).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STAI)*.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 Press.
- Taylor, J.(1953). A personality scale of manifest anxiety.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48*, 285-290.
- Taylor, R. B., & Hale, M.(1986). Testing alternative models of fear of crime.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77*, 151-189.
- Taylor, R. B., & Covington, J.(1993). Community structural change and fear of crime. *Social Problems, 40*, 374-395.
- Tversky, A.(1977). Features of similarity. *Psychological Review, 84*, 327-352.
- Warr, M.(1984). Fear of victimization: Why are women and the elderly more afraid. *Social Science Quarterly, 65*, 681-702.
- Watson, D., & Tellegen, A.(1985). Toward a consensual structure of mood. *Psychological Bulletin, 98*, 219-235.
- Weis, K., & Borges, S. S.(1973). Victimology and rape: The case of the legitimate victim. *Issues in Criminology, 8*, 71-115.
- Wilson, J. Q., & Kelling, G. L.(1985). Broken windows: The police and neighborhood safety. In A. Blumberg & E. Niederhoffer(Eds.), *The ambivalent force*. pp.220-228.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 Zung, W. W. K.(1971). A rating instrument for anxiety disorders. *Psychosomatics, 12*, 371-379.

On the Nature of Fear of Crime: A Review

Eunkyung Jo

Department of Psychology, Hallym University

This paper is a review of the studies on the fear of crime. It focuses on the social and psychological factors that influence the fear of crime and some methodological issues for future empirical studies. Due to the ambiguity of the concept, there are difficulties to draw a conclusion from various studies with different perspectives. The fear of crime is a complex construct in which the factors inside and outside of the community as well as personal variables interact with one another. The actual risk of victimization, victimization history, socialization process, mass media, perceived efficiency of official control, structural changes of community and incivility factors, and perceived vulnerability seem to be related to the fear of crime.